

##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5차)

개최일시	2020. 8. 18.(화) 15:00~17:20	회의장소	대학원별관 윤세영홀
참석자 (12명)	강동범(교무처장), 김민서(사범대학 공동대표), 김영석(관리처장), 김효민(학부 부총학생회장), 배소현(예산팀장), 백옥경(학생처장), 오희아(학부 총학생회장), 유세경(기획처장), 이상은(삼일회계법인), 임지혜(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 최수인(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 홍기석(총무처장)		
불참자 (1명)	김우정(대학원 학생회장)		
안건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조 관련 논의		
내용	<p>■ 개회</p> <p>위원장(교무처장)이 대학원 학생회장 위원이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리고, 총 13명의 위원 중 12명이 참석하여 회의 개최 과반수 참석의 요건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제 5차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라 함)를 개최하다.</p> <p>■ 회의내용</p> <p>- 위원장이 회의록 작성일정을 고지하고 위원들에게 기한 엄수를 요청하다. 오늘의 안건이 등심위 구조 관련 논의임을 말하고 특별장학금을 비롯한 상반기 운영 수입 및 지출 현황은 등심위 종료 후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함을 설명하다.</p> <p>- 학부 총학생회장이 구조 관련하여 학교에서 회신한 공문 내용을 확인하였는데, 등록금 반환 관련 논의의 진행 상황을 질문하다.</p> <p>- 기획처장이 등록금 환원이 아니라 코로나로 영향을 받은 상반기 수입과 지출 현황을 파악하고 그 부분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면 진행하겠다고 지난 회의에서 얘기하였음을 언급하다. 오늘 등심위가 종료되고 외부위원과 서기가 퇴장한 후 관련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하다. 타 학교에서도 코로나 상황으로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과 피해를 지원하려 장학금을 주려고 별도 간담회가 있는 것을 예를 들며 본교도 비슷한 형식으로 진행될 것임을 말하다.</p> <p>- 학생처장이 오늘 기획처로부터 예산 자료를 전달받아 그를 바탕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이다.</p>		

- 학부 총학생회장이 간담회의 참석대상을 질의하고, 학생처장이 오늘은 외부위원과 서기를 제외한 위원들이 남아 함께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참관인 허용 관련하여 학생의 원 요구안은 모든 구성원의 참관이었으나 학교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인원을 제한하거나 위원장이 승인하는 식의 제한 사항을 두는 것을 제안하였는데, 이에 대한 학교의 상세 검토의견을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참관인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2013년 이래로 꾸준히 논의해 온 문제임을 말하다. 관련 문제에 대해 학교에서는 참관 허용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회의록을 더욱 자세히 쓰는 것으로 보완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이를 토대로 학생위원들과의 합의를 이룬 적도 있었음을 언급하다. 학교가 참관인 허용 문제에 관해 회의 공개 측면과 대표성 측면에서 검토하였는데, 현재 본교 등심위의 학생위원은 6명이고, 단과대학별, 학부와 대학원별 대표성을 지니고 있기에 대표성문제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하다. 학교는 참관인 허용이 지니는 문제점들이 우려되어 회의 공개 차원에서는 속기사를 고용하거나 녹음을 통해 회의 내용을 그대로 적는 방안을 검토하였음을 덧붙이다. 그러나 속기사 고용의 경우 속기사가 외부인인 점, 비용이 크게 발생하여 회의 시간의 제약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위원들이 발언을 천천히 하거나 서기가 위원들에게 재 발언 요청을 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하여 더욱 정확한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임을 검토하였다고 답하다. 마지막으로 녹음은 시행하려면 비밀 보장과, 보관기한, 파기절차 등 관련법을 검토하여 주의를 기울여 관련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다. 현재 회의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각 위원의 검토를 거치는 상황에서 굳이 속기사 고용과 녹음의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고 답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참관인 허용 관련하여 2013년부터 논의가 진행되어 왔고, 학생위원들은 협의를 위해 참관인 시범운영이나 제한적 허용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학교와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음에 유감을 표하다. 배석을 허용하는 타 학교의 사례를 들며 본교도 대표성과 비밀 유지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자격을 제한한 참관인을 허용하는 것을 제안하며 논의의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다.

- 기획처장이 타 학교의 배석제도는 등심위 안전에 대하여 위원 외의 자의 보고가 필요할 때 소수 인원이 배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하며, 참관인 허용 문제에 관하여 학교와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고 언급하였는데, 그 부분에서 개선해 온 것이 회의록이라고 설명하다. 본교 등심위 위원은 총 13명으로 많은 편에 속하는데, 1~2명 참관을 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말하다. 등심위는 의결기관이고, 비공개할 내용도 있고, 위원으로서 참

관인에 대한 심적 부담감도 있다고 덧붙인다. 위원이 아닌 사람이 회의에 들어오는 것을 불편해 하는 위원들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위의 문제를 해결하려 배석 제한을 두며 학생, 교수, 직원 모두가 참관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한 것이라고 답한다. 참관인은 발언권과 의결권을 제한하여도 등심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 있으니까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인다. 회의 심의 내용인 예결산 자료도 홈페이지에 모두 공시되고 있는데, 소수 참관인이 열람하여 문제가 발생할지 의문이라고 말한다. 등심위에 서기로 참석했던 단대 대표들이 장내에 들어오는 것과 아닌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말하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소수 인원이라도 참관인 운영을 해보고 참관을 해본 사람에게 평가를 듣는 것이 객관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 학생처장이 본교가 타 학교에 비해 등심위의 학생 수가 많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다시 언급하며, 등심위에 참석한 6인의 학생위원들이 위원회의 상황과 분위기를 잘 알고 이를 다른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1~2명의 참관인이 추가로 참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말한다. 생생한 분위기를 전달하려면 1~2명의 참관인으로는 불가능하고 결국 모든 학생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불가능한 일이고, 지금의 각 위원들이 대표성을 갖고 회의에 참석하여 논의하고 결정 사항을 알리는 역할을 하기에 참관인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 위원장이 다른 위원들의 추가 의견을 질문한다.

- 총무처장이 학교위원들의 발언에 동의하며, 소수가 제한적으로 참관하는 것에 대한 효용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인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참관인 허용 시 위원의 대표성이 저하된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의미를 질의한다.

- 기획처장이 현재 등심위 위원들이 각 구성원을 대표하여 위촉된 것이기 때문에 참관인이 없어도 대표성이 충분히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교에서 다수의 인원이 참관할 시 부담이 있다고 하여 소수 인원을 허용할 것을 제안한 것인데, 학생 위원이 지속적으로 협의안을 제안하는데 학교에서도 현안보다 발전된 사안을 제안해주기를 요청한다.

- 기획처장이 학교에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하였으나 허용이 어렵다는 것이 최종안이고, 이 사안을 계속 논의하여도 학교와 학생간의 합의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한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참관인 허용이 대표성 저해가 된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서 설명을 재차 요구하다.

- 기획처장이 회신 공문에 저해라는 단어 때문에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위원으로도 대표성이 충분하여 참관인이 필요 없다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하다.

- 위원장이 등심위에 각 위원들이 대표로 참석하고 있는데 다른 소속의 참관인이 있으면 위원 스스로가 대표성을 보충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성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일 것이라고 덧붙인다. 참관인 허용은 오랜 시간 학생위원들이 요구하고 논의해온 문제이지만 해당 사안이 등심위 운영의 본질적인 문제인가라는 의문이 든다고 말한다. 참관이 허용되지 않는 현재 상태가 등심위의 구성이나 운영, 목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은데, 이 사안에 대해서 오랜 기간 해온 기존의 의견교환은 이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한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오랜 기간 논의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고 말하며, 학생 6명이 소통창구로서 회의 내용을 빠짐없이 전달하는 것이 어려우며 다른 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것과 학생 위원들이 전달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고 말한다. 참관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1회 시범운영을 한 후에 평가를 하는 것을 제안하다.

- 기획처장이 회의 내용을 알리는 측면이라면 회의록에 거의 모든 사항이 상세히 기록되어 1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고 말하며, 이 부분은 참관과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답하다. 따라서 등심위의 본질과 구조를 고려하였을 때 학교위원들은 참관인이 허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참관인 허용이 회의 내용 공개를 위한 것이라면 회의록 작성을 보다 정확하게 하는 방향을 서로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겠다는 것이 학교의 최종안이라고 말한다.

- 예산팀장이 위원들은 대표성을 갖고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대하여 인지하고 참석하기 때문에 이해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발언하고 있는데, 이를 모르는 참관인들이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각 위원들의 자유로운 발언에 제약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인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그에 대한 예시를 요청하다.

- 위원장이 각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와서 등심위를 구성하고 있는데, 위원이 아닌 사람이 배석하게 되면 단편적인 부분만 볼 수 있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회의 내용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록에 의해 회의내용을 알리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이라고 언급하다. 예를 들어 참관인이 위원들의 발언

을 자의적으로 전달하게 되면, 각 위원들은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전달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음을 말한다. 참관인 문제에 대한 학교의 입장에 대해 학생위원들의 양해를 부탁하며 추가 의견을 질의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참관인이 대표성을 저해한다는 부분이 이해가 어려움을 말하며 학교 재정의 절반이 학생들의 돈인데 그 돈의 사용을 궁금하여 참관 하는 것을 막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한다. 대표성 저해라는 것이 대표자에게 어떠한 압박을 가할 때 저해되는 것인데 참관인은 그렇게 운영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참관인 허용은 등심위를 더욱 민주적인 회의체로 운영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언급하다. 등심위에서 논의되는 내용이 공시되고 있는데 민감한 사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질의하며, 만약 민감한 사안이 있으면 비밀 유지서약서 등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인다. 회의 내용이 왜곡되어 전달되는 것은 회의록이 구체적으로 작성되니까 회의록을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학교와 학생이 합의점 도출이 어려우니 각 단위별로 1명씩 참관 시범 운영을 해보고 평가 하는 것을 제안하다.

- 기획처장이 이 부분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의결이 필요한 사항 같으나 대학원 학생회장이 불참하기도 하였고, 의결하여 결론을 내는 것보다는 논의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다음 논의로 넘어가는 것을 제안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참관인뿐만 아니라 위원들도 분위기 해석은 주관적으로 할 수 있고, 그러한 부분은 회의록 작성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학생위원들은 참관인 제도를 시범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며 이 부분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진행되기를 요청하다. 참관인 허용과는 별개로 대학평의원회 처럼 차기 위원과의 인수인계를 위해 현 위원들과 차기 위원들이 만나서 정리하는 회의시간을 갖는 것을 제안하다.

- 기획처장이 회의록을 전달해 주겠다고 말하며 구조 관련하여 논의한 내용들이 회의록에 모두 기록되어 있고, 학생들도 홈페이지에서 회의록을 보고 논의되었던 내용을 모두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현재 보직자도 내년에 바뀔 예정이어서 차기 위원들에게 논의사항을 전해줄 것이라고 덧붙인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교와 학생이 각자 인수인계 하는 것인지 질의하며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회의록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여 전달하는 것이 어떤지 제안하다.

- 기획처장이 차기 보직자가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학생 위원들은 언제 바뀌는 것인지 질의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11월 말 부터 바뀐다고 답하다.

- 위원장이 학교 위원들도 차기 보직자가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현재 위원들이 앞으로의 일을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한다. 이번 등심위  
에서 참관인 문제는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대학원 학생회장 위원이 개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했지만 이 문제를 오늘 의결을 하는 것에 대한 위원들의 의  
견을 구하다.

- 기획처장이 대학원 학생회장 위원도 불참하였는데 의결해서 결정짓는  
것 보다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기록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답하다.

- 위원장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사안으로 논의를 진행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구조 등심위 부분만 발췌하여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하다.

- 기획처장이 홈페이지에 이미 모든 회의록이 게시되어 있다고 답하다.

- 학생처장이 모든 회의록이 게시되어 있는데 꼭 정리된 것이 필요한  
것인지 질의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여 줄 것인지 질의하다.

- 위원장이 발췌한다는 것은 누락된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예산팀장도 참고자료로만 이용해야 할 것을 말한다.

- 위원장이 참관인 관련하여서 금년 등심위에서는 합의하지 못했음을  
말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생 입장에서 녹음이 필요함을 말하며, 논의 내  
용이 빨라 녹음 없이 정리가 어려움을 말한다.

- 기획처장이 녹음은 다음 예산 등심위 전까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녹음 진행 시 녹음의 주체, 목적, 파기절차 등을 확인하여 먼저 논의하고 모든  
위원이 동의하면 이듬해 등심위부터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교에서 초안을 작성할 것인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녹음은 유출 시의 책임소재, 구성원의 비밀보장, 명예훼손  
등 관련하여 까다로운 문제가 많아 법적 자문을 받아 검토한 후 안을 마련해보  
겠다고 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위에 언급된 예산 등심위가 언제인지 질의하고 기획처장이 1월이라고 답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녹음 관련 논의는 차기 회의에서 하는 것인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일단 초안이 작성되어야하고, 작성되면 공유할 예정이라고 답하다.
- 사범대학 공동대표가 1월 초에 등심위를 하면 12월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임을 말하다.
- 기획처장이 녹음 관련 부분은 논의라기보다 초안을 만들게 되면 학생처에 전달을 할 것을 말하다.
- 학생처장이 등심위를 개최하겠다는 의미가 아님을 말하다.
- 기획처장이 녹음 관련하여서는 변호사 자문을 받아 초안을 만들고 학생처를 통해 전달하고 그 부분이 합의가 되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음을 말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현재 회의 개최조건으로는 학생위원 전원이 참석하지 않아도 안건이 통과될 수 있는 것이 비민주적이라고 지적하며, 학생위원 1/2 이상이 참석하였을 때 의결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 제정하는 것을 제안하다.
- 기획처장이 고등교육법에 한 구성단위가 1/2를 넘지 못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회의체에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일처리를 위해 과반수를 채택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본 위원회에서도 과반수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러한 규정 제정 시 학생 위원들이 동의를 안 하는 경우 법적 기한이 있는 여러 사안들의 적시 처리가 어려울 수 있음을 말하며 해당 사안은 동의를 어렵다고 답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생위원들이 그러한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2020년도 등심위에서 예산과 등록금 책정을 한 번의 회의에서 의결한 것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아 등심위 참여를 거부한다고 했음을 말하다. 학생들이 학생의 의견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 자체를 거부할 때는 의결을 안 하는 것이 맞음을 말하며, 예산안은 적어도 2~3번 논의 하는 것이 맞으며, 학생들이 예산 통과가 불가하게 거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학생위원들이 1/2 라도 있을 때 의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다.

- 기획처장이 예산 편성관련 일정이 여유가 없음을 설명하다. 예결산(안)은 대학평의원회를 거쳐 등심위 안건으로 상정되는데, 대학평의원회와 신입생 고지서 발급하는 시점의 사이가 매우 짧음을 말하다. 해당 시기를 전후로 행정적 여력도 부족하고, 기능적인 문제가 있음을 말하다. 따라서 예산안을 충분히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자 4~5시간을 거쳐 등심위를 진행하였는데 보통 회의가 1~2시간에 끝나는 것을 감안하면 3~4번을 한 것과 동일한 시간이 소요된 것이라고 설명하다. 해당 기간에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할 시간이 없음을 양해를 구하며, 3일 전에 열람이 가능하게 하는 것도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음을 설명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여러 대내외적인 이유로 등록금을 동결하고 있는데, 동결을 가정하고 등록금 고지서를 고지할 수 없는 것인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등록금은 법적으로 물가상승률에 의거하여 인상할 여지가 있으나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엔 동결을 가정한 등록금으로 고지하기엔 행정상의 부담이 크다고 답하다. 가책정한 등록금과 실제 등록금이 다를 경우 환불하고 추가 납부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행정적 여력도 없고 학생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가책정한 등록금으로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은 어려움을 말하다. 다만 학생위원들이 미리 회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시간을 갖고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음을 말하며 양해를 부탁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등록금은 사회적 합의가 있어 동결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 학교가 인상을 하게 되면 단시간에 이루어질 건 아닐 것이라고 말하다. 이 경우 1~2차례 더 진행하는 것이 행정상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가책정 등록금으로 고지서를 발부한다고 해도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1월 말까지 두 차례 더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질의하다.

- 위원장이 추가로 개회를 원하는 것이 예결산 심사가 더 필요하기 때문인 것인지 질의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생들은 고시반 지원 확대, 장학금 확충, 캠퍼스 안전 관련 요구 등 항상 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한차례 회의에서 결정하기엔 통보로 느껴진다고 답하다. 예산안에 대한 학생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협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질의하다.

- 위원장이 등심위는 아니더라도 예산안을 학생들에게 먼저 송부하여 검토할 시간을 주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학생들이 사전에 각 부서를 통하여 요구하는 것들을 부서에서 검토 후 반영한 예산을 신청하고 그러한 예산안들이 모여 등심위에 전체 예산안이 상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하다. 등심위에서 심의하는 예산안은 학교 전체



의 예산안이기에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느 사업을 늘리고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답하다. 등심위에서 개별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논하는 것 보다는 예산 편성단계에서 각 부서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더 중요할 것이라고 말한다.

- 학생처장이 학생처를 통하여 학생들이 의견을 개진해 왔음을 말하며, 학교는 제한된 예산에서 고정적인 비용이나 학교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반영되었을지는 모르나 최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다. 장학금의 경우 국가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맞추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장학금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인다. 학기 중에 학생들이 의견을 주면 각 부서에 전달하여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요청을 하겠으나 등심위 자리에서 개별 사업의 예산을 조정하는 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위원들의 발언은 이해하나 본교 등심위의 예산안이 타 학교에 비해 빨리 결정되는 편이어서 1월 말 전까지 한 번 더 개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등심위 자리에서 개별 사업 조정이 어려우면 언제 편성 시에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갖는 것인지 질의하다.

- 학생처장이 본교의 정기협의체가 있음을 말하며, 타 학교에 비해 본교는 학기 중간에 협의체를 열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침을 설명하고 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실무선의 논의를 거쳐 처장이나 총장에게 전달될 수 있음을 설명하다. 학교는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 학생들이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이용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인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정기협의체를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하였지만 어떻게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전달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 학생처장이 학교에서는 서면으로 요구한 것에 대하여는 답변하였고, 고시반 특별예산 배정 등으로 알려주었다고 생각하였는데 그러한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제안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11월 중에 녹음 관련 하여 만나거나 합의하는 자리가 있으면 그때쯤엔 예산 계획서가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의 증감이 반영된 자료를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 기획처장이 예산안은 확정되기 전까지 주기 어렵다고 답하다. 한 차례의 회의로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1월 달에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게 최대한 일정을 앞당기도록 노력해보겠다고 하며,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한다.

- 위원장이 5시에 일정이 있는 위원도 있고, 등심위 종료 후 간담회가 진행되어야 하니 논의 마무리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추가 발언을 요청하다.

- 사범대학 공동대표가 정기협의체 자리에서 예산을 토대로 논의할 수 있는 것인지 질의하다.

- 학생처장이 학생들이 사전에 예산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것들은 정기협의체를 통하여 충분히 제안하고, 등심위에서는 정기협의체에서 얘기한 사안은 제외하고 예결산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다.

- 사범대학 공동대표가 실험실습비 열람을 하였는데 이것이 차등등록금의 근거가 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하며 추가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다.

- 기획처장이 계열별 등록금의 차이는 1980년대 교육부의 교육비 차이도에 의거하여 결정되었으며 이후 물가상승률을 바탕으로 비율로 인상해온 것이기 때문에 현재 등록금의 단가에 대하여 명확하게 차이를 밝히기 어렵다고 답하다. 학교에서도 수차례 검토해 보았으나 모든 학교가 마찬가지로 다양한 요인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 없이 이야기 하면 혼란만 가중할 것이라고 답하다.

- 학생처장이 실험실습비는 등록금 차이의 일부이지 전부가 아니라고 덧붙인다. 각 학과별로 이수학점이나, 공간사용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하는데 그러한 사항들을 모두 파악하기 어려움을 말하다.

- 위원장이 등록금 구조관련 논의는 마무리 할 것을 말하다.

- 외부위원이 일정이 있어 퇴장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구조 관련 안건이 1시간 안에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며, 등심위는 예결산 관련 사안을 심의하는 만큼 오랜 시간 논의가 필요한 회의라고 주장하다. 오늘은 등심위 이후 간담회도 예정되어 있는데 위원들이 회의 이후 일정이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다.

- 기획처장이 등록금 차등에 관한 사항은 오늘의 안건이 아님을 말하다.

- 위원장이 참관인이나 구조 관련 문제로 오랜 시간 논의해 왔으나 결론 없이 비슷한 논거로 반복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하다. 회의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도 서로 입장이 상이하기 때문에 똑같은 논의를 계속한다 해도 결론이 나기 어렵다고 말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위원들도 일정을 조정하여 시간을 내어 실질적 논의를 위해 구조 등심위에 참석한 것인데, 오늘 논의 자리에서 깊은 논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질의하다.

- 위원장이 이미 한 시간 반 동안 같은 사안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합의 못하는 걸로 결론을 내기로 하지 않았냐고 반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구조 관련 5~6개의 요구안을 한 시간 반 만에 끝내는 건 어렵다고 말하다.

- 위원장이 비슷한 논의의 반복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자 함이라고 말하자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생 위원들은 회차를 거듭할수록 협의를 하고자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똑같은 논의라고 말한 것에 유감을 표하다.

- 기획처장이 참관인 허용과 속기사 및 녹취 관련하여서는 이미 공문으로 답변하였고, 회의 개최 조건 등에 대하여서는 지난번 회의 때 이미 학교의 입장을 설명하였다고 말하며, 이번 공문에는 위 내용은 없었기에 참관인 허용과 속기사 및 녹취 관련 사안이 주된 안건이라 생각하였다고 말하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구조 관련 요구안 중 지난번에 합의 못하고 끝낸 사안들이 있고, 지난번 회의에서도 위원들의 회의 이후 일정으로 충분한 논의를 못한 부분이 있었기에 오늘은 충분히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다.

- 위원장이 구조 관련하여 추가로 논의할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이야기 할 것을 제안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회의 소집에 대해 타 학교처럼 위원 1/3이상 요청이 있을 때 회의 소집하는 규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다.

- 기획처장이 등심위는 예결산 심의, 등록금 책정 등 정례적인 안건이 정해져 있으나 위원들의 동의하에 차기 회의를 잡아 구조 논의와 같은 비 정례적인 안건들에 대해서도 회의를 소집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은 필요가 없다고 말하다. 학생위원들이 학생처를 통하여 안건 상정을 요청한 경우 보통 상정해 왔는데, 이번 특별장학금 관련한 건은 등록금 환불이 아닌 장학금 형태로 고민하겠다고 한 것이기에 등심위 안건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별도 간담회 열어 예산 집행현황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등심위 내규에 1/3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을 시에 회의 소집이나 안건 상정에 대한 절차를 명시하는 것을 제안하며, 안건 상정 요청서를 보내도 거부되는 이유와 절차가 알 수 있게 내규에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다.

- 기획처장이 그동안 위원 1/3 이상 요구한다는 조건 없이도 학생위원들의 요청으로 인해 위원들이 상호 논의해서 다음 회의를 소집하여 왔기 때문에 현재 내규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등록금 반환 논의에 대해 4월부터 계속 해야 한다고 했는데 학교가 4개월 뒤인 8월에서야 논의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다.

- 기획처장이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등록금 반환이 아니고 코로나로 인하여 발생한 학생들의 피해를 특별장학금의 형태로 지원하고자 하는데, 그러려면 일단 상반기의 예산 집행 현황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에서야 논의 자리가 마련될 수밖에 없었음을 설명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생들은 그 취지가 등록금 반환이라 생각하고 교육부에서도 등심위에서 논의하라고 하였는데 총장이 거절하여 논의하지 못하는 것인지 질의하다. 안건 상정 문제에 있어서 명확한 절차가 없으니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교에 의지에 따라 안건이 정해지는 것 같다고 덧붙이다.

- 기획처장이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등록금 환불 관련하여서는 보고된 사안이며, 학생들의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해 등록금의 환불이나 반환이 아닌 특별장학금을 지원하려 한다고 답하다. 학교에서는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추가 학점 이수, 성적 평가 방식 변경 등 다방면으로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답하다. 위 내용에 대한 논의는 등심위가 종료된 이후 간담회에서 진행하자고 말한다.

- 학생처장이 지금 등심위도 학생들이 구조에 대해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하여 2차례 개최하고 있음을 말한다. 특별장학금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상반기는 3~8월이나 오늘 논의를 위해 7월 말로 자료를 끊어서 보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4월에는 관련 논의가 어려웠음을 말한다. 안건 상정절차를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이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그 부분을 내규에 명시하지 않는 이유를 질의하고, 학생처장이 내규 수정은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함을 말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12월쯤에 녹음이나 예산안 편성 등에 대해 공유하고 논의하는 등심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 기획처장이 학생위원들의 집행부가 11월에 교체됨을 말하자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1월 1일자라고 정정하다.

- 기획처장이 녹음에 대한 건은 안을 마련하여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으나 예산에 대한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1월에 최소 2

회 이상으로 등심위를 개최했으면 좋겠다고 하니 최대한 일정을 조정해보겠다고 답변하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해당 안건에 대해 대면 회의를 제안하다.

- 기획처장이 앞으로 코로나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고, 위와 같은 사항들은 서면으로도 확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차등등록금이 실험실습비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해 등심위에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함을 주장하다.

- 학생처장이 각 학과별로 수업시수가 다르고, 실험과 실습을 위하여 사용하는 기자재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답하며, 실험실습비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하다.

- 사범대학 공동대표가 실험실습비가 일부 근거라면 차등등록금이 산출이 된 다른 근거들에 대한 설명과 이를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하다.

- 기획처장이 교육부나 다른 학교들도 발표하지 못하는 것처럼 다양한 차이가 학과별로 존재하고 공통 인프라도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명확하게 산출하는 것이 어렵다고 답하다. 학생처장이 언급한 요소와 같은 것들로 차이는 존재하지만 정확히 밝혀내기 어렵다고 설명하다.

- 위원장이 학생들 입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해하나 우리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쉽지 않은 문제임을 말하다.

- 학생처장이 실기 과목의 경우 교수 한명 당 수강하는 학생 수가 적은데, 이 경우 교원의 추가임용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한 비용들이 다 반영된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덧붙이다.

- 관리처장이 단대마다 교원 수, 사용 공간, 사용하는 기자제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가 나오기 어려움을 양해해 달라고 하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학교는 100%의 근거를 찾지 못하는 것인지 질의하다.

- 학생처장이 80년대에 교육부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인문계열 교육비를 기준으로 교육비 차이도를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정확한 원가계산에 의거한 것이 아니었음을 설명하다. 다양한 요인들이 관여되어 있기에 현실적으로 파악이 어려우나 앞서 말한 교원 수, 수업시수, 공간, 기자재 등을 고려했을 때 계열별 등록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다.

- 기획처장이 교수 1인당 학생비율 등과 같은 개별 자료는 존재하지만 이러한 데이터만으로는 등록금의 차이를 명확하게 밝혀내기 어려움을 말한다. 또한 학교는 모든 학과가 이용하는 공통인프라가 있으며, 다양한 학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학과가 발전하면서 학교 전체의 브랜딩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 비용을 명확하게 나누는 것이 어려움을 말한다.

- 위원장이 구조 관련 논의는 이쯤에서 마무리할 것을 제안하다.

- 사범대학 공동대표가 학교에서 논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줄 것을 요청하다.

- 학생처장이 검토해보고 전달할 사항이 있으면 전달하겠다고 답하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외부위원이 바뀌는 시점이 정해져 있는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외부위원의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선임이 어려워 보통 사임의사를 밝히기 전까지 연임을 요청하고 있다고 답하다. 새로운 외부위원을 모시게 되면 학생위원들이 선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다.

-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가 등심위가 매년 연도에 따라 종료시점이 다른데, 한번 선임이 되면 1년 임기가 보장되는 것인지 질의하자 기획처장이 등심위 위원은 연도별로 위촉하고 있으며, 외부위원의 경우 연임을 요청하고 있다고 답하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선임과정에서 학생참여를 보장해 준다고 하였는데 그 시점이 언제쯤인지 질의하다.

- 학생처장이 외부위원을 새로 선임하게 되면 학생들에게 공지할 것임을 답하다.

- 사범대학 공동대표가 등록금 산정근거를 매년 공시하게 되어 있는데, 2020년도 등록금 산정근거는 언제 공시되는 것인지 질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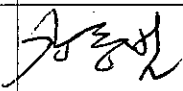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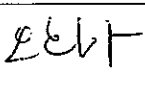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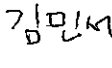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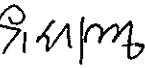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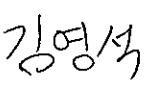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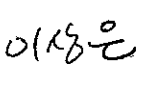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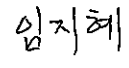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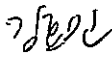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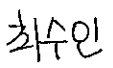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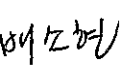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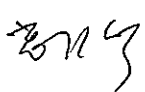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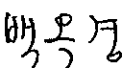
- 예산팀장이 정보공시는 관련 법령과 지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등록금 산정근거를 4월에 이미 기관에 제출하였으며, 대국민 공시일정은 대학정보공시센터에 따름을 설명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특별히 논의를 하고자 등심위로 모인 만큼 논의 시간의 충분한 보장을 요청하다.

- 위원장이 5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폐회를 선언하다.

위의 기록이 사실임을 확인함.

2020년 8월 18일

확 인	직 위	성 명	서 명	직 위	성 명	서 명
	위원장	강동범		위원장	오희아	
위 원	김민서		위 원	유세경		
위 원	김영석		위 원	이상은		
위 원	김우정	불 참	위 원	임지혜		
위 원	김효민		위 원	최수인		
위 원	배소현		위 원	홍기석		
위 원	백옥경					
작성 자	예산탐		안여지		안여지	